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의 안 번 호 350

2024. 1. 25. 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. 16. / 한근수 의원 등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·보완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를 규정(제1장)
-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(제2장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(제3장)
-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(제4장)
-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5장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안건은 2011년 제정된 「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를 현행화하고,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 없이 운영되어오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정비·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.
-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,
- 안 제10조에서 제1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습니다.
- 안 제18조에서 제2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읍·면·동별 지역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며,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정비・보완함으로써,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